

소년분류심사서 시설내처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폭력청소년의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조 윤 오*

초 록

본 연구는 폭력청소년에 대한 분류심사서 최종 의견이 남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소년분류심사서 내 조사 항목을 검토하여 시설내처우 결정 관련 요인을 분석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2008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약 1년 동안 이루어졌던 총 412명의 폭력청소년 분류심사서를 분석한 결과, 남자 폭력청소년(N=296)의 경우 보호자 보호의지, 가출경험, 피해자 합의유무, 중퇴유무, 성폭력 행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시설내처우 결정 요인이었던 반면, 여자 폭력청소년(N=116)은 보호의지와 가출경험, 결손가족(편부가정) 세 요소가 시설내처우 결정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내처우 결정에 있어 남녀 간의 성별 차이가 존재하는바, 성별에 따른 소년처우 특성화(gender-specific) 방침이 소년원과 보호관찰소, 지역사회 사후지도 전반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동시에 성별 기준 관련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보다 심층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성별차이, 여자 폭력청소년, 비행청소년, 소년분류심사원, 위험요인

* 동국대학교-서울, 경찰행정학과 교수

I. 서 론

청소년에게 있어 폭력행동은 여자보다는 남자 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로 여겨진다(Benda et al., 2001; Trulson et al., 2005).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서구 국가들에서 여자 청소년의 폭력행동이 증가하면서 공격성에서의 성별 격차(gender gap)가 감소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Zimmerman & Messner, 2010).

우리나라 공식통계에서도 2009년 한 해 소년범 113,022명 중 17.3%에 해당하는 19,513명이 여자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나, 2005년 14.3% 비중에 불과했던 여성청소년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법무부, 2011). 또한, 여성에 의한 폭행사건이 2005년 3,944건에서 2009년 한 해 23,974로 급증하여 전반적으로 폭력에 있어서의 남녀 성별 차이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법무연수원, 2010). FBI 범죄통계보고서(Uniform Crime Report)를 활용한 연구에서도 최근 삼년 동안 미국에서 여성 폭력범죄가 증가하여 남성과 여성의 폭력성 성별 격차(gender gap)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Heimer, 2000; O'Brien, 1999).

따라서 소년분류심사원과 같은 청소년 처우 결정 담당 기관이 사용하는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성별에 따라 그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폭력청소년에 대한 성별 격차 실태와 관련 위험요인을 보다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폭력성향 증가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논의가 존재하나, 증가하는 여자폭력사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그 위험요인을 형사사법 기관이 어떻게 다른 잣대로 해석하느냐에 대해서는 별 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조윤오,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8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서울 소년분류심사원에 접수된 청소년 폭력사범 412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분류심사관이 사용한 조사항목 내용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폭력적인 문제행동으로 분류심사원에 오게 된 청소년들은 전문 담당 심사관에 의해 그 위험성 정도와 개인 환경 특징, 처우 내용(사회내 처우 또는 시설내 처우)의 타당성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받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소년원 등의 시설내 처우가 사회내 처우보다 폭력성 및 문제행동 면에서 더 심각한 비행청소년으로 판단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여기에서 유의해야할 것은 소년법 목적에 따라 분류심사서 내의 조사항목이 반드시

소년의 재범관련 고위험 가능성만을 잡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소년 개별화” 처우 전략에 따라 어떤 보호처분이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육성에 가장 도움이 될지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항목들을 조사하는 것이기에 그 내용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분류심사서 조사항목들을 바탕으로 소년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보호처분 내용이 최종 조사관 의견란 형태로 분류심사서 마지막 줄에 제시된다는 점이다. 전문 조사관의 최종 의견이 100% 모두 소년부 담당관사의 최종처분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나, 사후 소년원 내 소년 교육지도 방침과 퇴원 후 보호관찰 지도·감독 전략 정보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전문 조사관의 처우 권고안이 중요한 소년보호 정책수립의 기본 나침반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실제 전문 심사관의 각종 심리검사와 상담 등을 통해 어떻게 지도하면 다시 비행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라갈 수 있을지를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소년분류심사”의 궁극적 목표인바, 최종결정 내용은 비행청소년의 재범위험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법무부, 2010).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최종 조사관 의견을 시설내처분과 사회내처분으로 대별하여 그 두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조사항목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는데 초점을 둔다. 사회내처분은 소년원 구금(8호 충격구금 포함) 처분을 말하고, 사회내처분은 소년원 구금을 제외한 모든 지역사회 보호처분 내용(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의미한다.

여자 폭력청소년에 대한 시설내처우 결정 요인이 실무에서 남자 청소년의 그것과 다르다면, 향후 여자 폭력청소년에 대한 진단도구 방법이나 항목 내용뿐만 아니라 소년원 지도방침, 보호관찰 지도·감독 전략, 사후지도(aftercare) 서비스 방법 등도 성별에 따라 달라질 필요가 있다. 비행청소년들의 재범가능성이나 위험성 평가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많은 평가도구들이 성별이나 성장변화 측면에서 충분히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는 것도 그 도구들이 너무 남자 중심의 폭력성에 초점을 맞춰 미래 행동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Penney et al.,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폭력청소년에 대한 시설내처우 결정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 관련 요인을 찾는데 궁극적인 연구 목표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소년분류심사의 기능 및 조사항목 내용

기본적으로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부 판사가 범죄 및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게 적합한 보호처분을 내리기 위해 조사관으로 하여금 소년을 집중 관찰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게 하는 곳이고, 문제행동 소년의 재범위험성 등을 심사하거나 단기 교육을 받도록 하게 하는 임시조치 위탁 장소를 말한다(법무부, 2010). 즉, 전문 분류심사관이 작성한 위험성 정도 평가 및 소년지원 사항이 “분류심사서”라고 할 수 있는데, 반드시 심사관의 최종 결정이 소년법원 판사의 처우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문 분류심사관이 작성한 심사서와 최종 의견내용은 중요한 소년범 위험 평가 자료가 되고, 보호자의 자녀 교육자료 및 심리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최종결정은 우리나라 소년사법 정책 전문가가 비행청소년을 관찰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내린 신뢰성 높은 위험성 평가 처우 지표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최석윤, 2008). 위에서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소년법원 판사에게 제출하는 분류심사서의 조사관 의견이 모든 케이스에서 청소년 처우내용의 최종 판단을 결정짓는다고 볼 수 없다. 때로는 담당 판사가 분류심사관의 의견과 상이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관의 시설내 결정 판단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결정이 남녀 폭력청소년 모델에서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비교해봄으로써 사후 소년보호 및 교정·지원정책을 보다 성별-개별화 측면에서 전문화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하겠다. 소년사법 시스템의 전문 심사관이 사용하는 기준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남녀 폭력청소년에 대한 위험성 평가 기준이 실제 다르다면, 향후 재범률 등을 기준으로 기존 평가서의 타당성 검사도 신중히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소년사법정책에서 소년분류심사서는 일종의 구조화된 소년 위험성 평가 도구 역할을 한다. 많은 서구국가의 연구에서 위험성 평가의 목적은 비행청소년의 미래 행동을 예측하여 가장 적합한 보호처분 방향을 제시하고, 장래의 재범 및 문제행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었다(Schwalbe et al., 2006).

물론 분류심사서내의 조사항목 모두가 일반적인 재범 위험요인(risk factors)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소년법의 목적에 따라 보호처분 내용은 단순히 소년의 비행, 범죄 행동에 대한 처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교육적 조치까지 포함하고 있기에 모든 분류심사서 조사항목을 재범 고위험 요인으로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 즉, 조사관이 조사하는 가족관계, 피해자 합의유무, 비행경력 등의 항목들이 모두 재범관련 위험 요인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결국 처우 개별화를 수립한다는 소년사법의 목적 상 분류심사서에는 특정 사안들을 조사하여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분류심사서는 어느 정도 소년의 장래 사회적응 가능성과 건전한 성장 잠재력 자체를 예견하는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 하겠다.

여기에서 위험요인(risk factors)라는 용어를 시설내처우 결정 예측요인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다. 위험요인은 특정 결과와 연관된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이나 경험이나 사건 등을 지칭하는 상황 전반을 의미한다(Mrazek & Gaggerty, 1994). 소년비행과 관련하여 여기에서는 말하는 특정 결과는 주로 재범을 의미하므로 이 위험요인이 가치중립적이기보다는 다소 부정적 의미로 해석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이유에서 심리학 분야에서는 때로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라는 용어가 대신 사용되기도 하였다(Kraemer et al., 1997). Kraemer 등(1997)은 특정 상황을 유발시키는 요인들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여기에 상호작용 요인(correlate), 위험요인(risk factors), 요소(mark), 인과적 요인(causal) 등이 혼용되었다.

위험요인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 패러다임을 시도하여 그 용어들을 정확히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호작용 요인(correlate)이란 두 요인이 서로 관련성은 있지만 시간적인 측면에서 서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변수들이 높은 음(-)의 또는 양(+의) 관련성은 서로 갖고 있으나, 그것이 결코 원인-결과 관계를 확정짓는 수준의 인과성은 없다고 하겠다.

반면, 위험요인(risk factors)은 두 변수가 높은 상관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한 요인이 다른 결과변수의 발생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요소(mark)는 일종의 위험요인에 속하나 “인과성” 측면에서 결과와 관련성을 위험요인(risk factors)만큼 크게 갖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는 고정요소와 변동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 고정요소에는 성별, 생년월일과 같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요인들이 있고, 변동요소에는 나이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요인이 있다.

마지막으로 인과적 요인(causal)이란 객관적 실험 등을 통해 명확히 특정 사건이 어떤 원인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검증됨으로써 위험요인과 달리 이 경우는 많은 복합적인 증거들이 그 인과관계 입증에 동원된다 하겠고, 그로 인해 원인-결과 관계가 상식적 수준에서 거의 일반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Kraemer et al., 1997)¹⁾.

실제 최근 분류심사서 808건을 분석한 한 연구결과를 보면, 범죄유형, 전과, 가출, 가족결손,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보호의지 유무가 우리나라 조사관의 최종결정(시설내 처우 또는 사회내 처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조윤오, 2010). 즉,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문 분류심사관의 분류심사서가 특정 위험요인을 기반으로 서구의 위험성 평가도구 역할을 어느 정도 해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년법에 의거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 등에게 위탁과 같은 1호 처분을 할 수 있고, 수감명령, 사회봉사명령, 장단기 보호관찰과 같은 2호, 3호, 4호, 및 5호 처분도 할 수 있다. 또한 복지시설 등의 위탁이나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처우도 있고,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와 장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도 내릴 수 있다.²⁾

이러한 다양한 소년처우 방법을 담당 판사가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화된 비행청소년 조사서가 전제되어야 한다(원혜옥, 2002). 만약 분류심사관의 평가

1) 약간씩 그 의미가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나, 위험요인이란 용어가 확률적으로 특정 사건 유발 가능성 자체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본 연구 주제와 가장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본다. 위험요인이 실험 등을 통해 확정된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나타날 가능성 정도만 암시하므로 다양한 미래 행동 및 결과 예측 인자로써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하겠다(Bursik & Grasmick, 1993). 아직까지 분류심사서 내의 항목들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그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기에 인과적 요인보다는 일반 위험요인이라고 간주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실제 소년분류심사서 내의 특정 최종 결과(시설내처우 결정)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그 특정 결과가 어떻게 그 가능성을 증가시키는지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기에 위험요인이라는 용어를 본 연구에서 잠정적으로 사용하여 “시설내처우” 결정 요인을 밝히도록 한다.

2)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소년법은 소년 보호처분의 다양화를 위하여 제32조 제1항 5호, 6호에서 사회봉사명령과 수감명령을 주된 처분으로 변경하였고, 대상소년의 연령을 변화시켜 상한 연령을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추는 동시에 하한 연령 역시 12세에 10세로 낮추었다(법무부, 2010).

서가 소년의 성격과 행동,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소년법원의 존재의미와 판사의 개별화된 처우방법 선택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될 수 있다. 분류심사서는 향후 개별화된 보호처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년사법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 정보로 활용된다. 다시 말해 분류심사서는 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사회적 제재 방식을 결정짓고, 소년이 가진 고위험요인을 상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며, 보호요인 및 지원방안을 확보할 수도 있고, 소년 개인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소년사법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³⁾

2. 폭력청소년 위험요인 관련 연구

폭력행위를 유발하는 관련 요인은 수 없이 많다. 그리고 그 요인은 폭력이 발생하게 되는 배경과 청소년 개인의 성장 발달 과정, 다양한 개인적·환경적 특징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Heilbrum et al., 2005). 청소년 폭력 또는 문제행위를 예측하는 요인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으나, 보통 많은 선행연구들이 특정 위험요인에 있어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Trulson et al., 2005; Funk, 1999; Schwalbe et al., 2006). 가장 많이 쓰이는 위험예측 요인은 연령, 성별, 전과, 약물경험, 조직범죄 개 관여, 교도소 시설구금 경험 등으로 볼 수 있다. 연령은 가장 청소년 재범을 예측하는 일반적 요인 중의 하나로써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문제행동 위험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겠다(Archwamety & Katsiyannis, 1998; Benda et al., 2001). 이 외에도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고위험 예측 변수로 청소년 교육수준, 인종, 정신질병 여부 등이 제시되고 있다(Minor et al., 2008).

청소년 폭력 인자로써 가족갈등, 비행교우와의 접촉, 여가시간 활용도 등을 제시한

3) 이러한 분류심사원의 심사서 양식은 체크리스트 방식의 자동점수 계산법이 아니라 수기형태의 구술형 기술법을 따르고 있으나, 그 조사항목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체크리스트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조운오, 2010). 인구사회학적인 요인, 전과, 범죄유형, 피해자 합의여부, 공범여부, 상담태도, 보호의지, IQ, 각종 성격검사 등의 고위험 요인을 모두 기술하여 검토한 후, 조사관의 최종결정이 “시설내 처우” 또는 “사회내 처우”로 나뉘지기에 포인트 비율 방식이나 체크리스트 방식에 따른 각 요인별 합을 토대로 의견을 내는 것과 그 결과 면에서 유사한 방식을 쓰고 있다. 많은 고위험 요인 중 조사관이 주관적으로 강조하는 가중치 요인이 있어 최종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각각의 조사 항목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조사관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경우도 있는데, 많은 청소년 재범 고위험 변수를 정적인 요인(static factors)과 동적인 요인(dynamic factors)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Cottle et al., 2001). 정적인 위험 요인이란 쉽게 교정 개입으로 바뀔 수 없는 변수로 청소년의 성별 등이 포함되고, 동적인 위험요인에는 개입으로 변화·발전이 가능한 인지능력, 가족관계 수립, 학업수준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청소년 폭력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원인들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그것은 비행청소년의 (1) 개인적 측면(individual factors), (2) 가족 측면(family factors), (3) 학교관련 측면(school-related factors), (4) 교우관계 측면(peer-related factors), (5) 환경적 측면(environmental factors)으로 구분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이다(Heilbrun et al., 2005).

첫째, 개인적 측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정신건강적 요인, 성격특징 등이 포함된다. 개인적 측면에 범죄관련 요인 및 IQ 요인이 포함되는데, 과거 가출경험, 약물중독 경력, 지능정도, 문제행동 경력 등이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⁴⁾

둘째, 가족 측면에서는 부모의 미약한 보호의지와 부적합한 양육기술, 소년과의 부정적인 관계형성 정도가 폭력 유발요인으로 다루어진다(Hawkins et al., 2000; Dembo et al., 2000).

셋째, 학업 관련 측면에서는 학교이탈, 학교 부적응, 성적부실 등이 폭력행동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특히, 학교에서의 수업이탈은 학교 중퇴로 연결되어 청소년의 폭력을 유발하는 핵심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Hawkins et al., 2000).

넷째, 교우 요인은 비행청소년과의 접촉이 폭력행동을 증가시킬 가능성과 연관된다(Jessor et al., 1995). 단, 일부 연구는 비행교우와의 접촉이 폭력행동과 큰 연관성이 없다고 보기도 해 이에 대해서는 일관된 결론이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다(DHHS, 2001).

다섯째, 환경적 요인은 지역사회 특성이 청소년의 폭력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가정 주변에서 폭력행동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은 청소년의 폭력행동도 증가할 것으로 본다(Kashani et al., 1999). 실제 지역사회에서 폭력을 간접적으로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청소년의 폭력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Dawson & Reiter, 1998).

4) http://www.who.int/violence_injury_prevention/violence/global_campaign/en/youthviolencefacts.pdf
최종확인 2011년 8월 17일

3. 성별에 따른 위험요인 차이 연구

최근 남자 비행청소년과 여자 비행청소년을 구분하여 각각의 범죄 예측모델을 따로 만들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Trulson과 동료들(2005)이 시행했던 연구에서는 구금된 비행청소년들의 재범률을 추적 조사하면서, 남자 청소년의 재범 예측요인이 여자 청소년의 그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의 예측요인에 연령, 시설수용 기간, 강력범죄 전과, 조직범죄 갱 참여전력, 수용시설 내에서의 생활정도, 정신질환 여섯 가지가 있었던 반면, 여자 청소년 위험 예측요인은 수용시설 내에서의 생활정도와 교육수준 두 가지 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Trulson et al., 2005). 즉, 재범이라는 문제행동 발생이 남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그 재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수적으로 더 많을 뿐만 아니라, 그 특징 면에서도 과거 불량교우와의 접촉 및 수용기간 등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남자 비행청소년의 재범 위험인자로써 가족 경제상황, 학교 부적응, 비행교우 접촉, 최초 비행시작 연령, 시설구금 경력, 대인범죄 횟수가 중요하게 다루어진 연구도 있다(Funk, 1999). 남자 청소년의 위험요인이 다양했던 반면, 통계분석 결과에서 여자 청소년은 오직 두 변수만 유의미하게 나와 수적으로 남녀 성별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여자 청소년의 두 변수는 (1) 가출여부와 (2) 어린 시절 학대경험으로 나타났는데, 특이한 것은 남자 청소년 위험요인과 전혀 다른 두 요인이 여자 청소년이 재범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청소년의 재범 위험성을 진단할 때, 성별에 따라 완전히 상이한 기준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재범예방 측면에서 성별 적합적(gender-specific) 차원의 개별화된 소년 교정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위험성 평가 연구에서는 측정도구 내 대부분의 문항이 모든 남자 청소년의 위험성 예측요인으로 반면, 여자 보호관찰대상자에게는 일부분의 문항만 위험요인으로 사용되었다(Schwalbe et al., 2006). 이는 앞의 연구들과도 유사한 결과인데, 특이한 것은 여자청소년이 인종에 따라 그 예측인자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즉, 남자청소년은 인종에 상관없이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아 위험성 점수가 산정된 반면, 여자청소년은 인종에 따라 재범 위험 요인이 다르게 나

타났다. 이 연구에서 흑인 여자청소년이 전과, 학교 부적응, 비행교우, 부모감독 정도에 따라 위험성 정도가 다르게 결정된 반면, 백인 여자청소년은 오직 “폭력전과”라는 하나의 변수에 의해 그 위험성이 결정되었다. 이와 같이 성별에 따라 청소년 재범 위험성 요인은 다를 수 있고, 특정 변수에 따라 같은 성별 내에서도 그 위험성 정도는 상이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발표된 Zimmerman과 Messner(2010)의 연구에 따르면, 남녀 범죄자의 성별 격차(gender gap)가 줄어들고 있고, 남녀 범죄자의 재범 유발 요인모델이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범주화될 수 있다. 그것은 (1) 가족특성(family/household), (2) 행동/인지성격 특성(behavioral/cognitive), (3) 지역사회 특성(neighborhood)인데, 연구 결과는 남녀 성별 격차가 폭력행동 면에서 어떻게 종단적으로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즉, 남녀 범죄자의 성별 격차가 줄어드는 것이 여성이 가진 독특한 관계 지향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보고, 폭력에 대한 비행교우의 영향력에 여성이 특히 민감하여 성별 격차가 남녀 범죄자 사이에서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설명했다(Zimmerman & Messner, 2010).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여자청소년의 폭력행위 예측 요인을 연구한 연구(조운오, 2009)에서도 남자청소년보다 여자청소년이 더 적은 수의 폭력예측 요인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요인 특성 면에서도 성별 차이를 보였는데, 여자청소년이 (1) 가족구조(결손가정)와 (2) 부모관계라는 두 변수에서만 유의미한 반응을 보인 반면, 남자청소년은 폭력행동 예측변수로써 (1) 가족구조(결손가정), (2) 교우관계, (3) 학교교사와의 관계라는 세 가지 요인이 유의미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자청소년이 폭력행동 유발 측면에서 남자청소년보다 역기능적 가족관계 및 부모갈등에 의해 더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범위험 예측 평가 항목에서 보통 개인, 범죄, 가족 관련 변수 외에도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역기능 관련 변수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우리나라 분류심사서에도 기본적인 IQ 검사나 MMPI 성격검사 등 다양한 심리상태 검사 결과가 포함되는데, 연구에 따르면 특히 문제행동을 보이는 남녀 청소년의 경우,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더 심각한 우울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llgood-Merten et al., 1990). 또한, 불안, 적대감, 비만-강박증 등의 다양한 정신질병 상태에 대해 비행청소년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자 비행청소년은 전체의 약 27%만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자 비행청소년의 전체의 84%가 각종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itchell et al., 1997).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폭력사건(일반 단순폭력과 성폭력)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된 남녀 청소년의 특징을 살펴보고, 담당 분류심사관의 최종 의견(시설내처우 또는 사회내처우)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기본 특징은 폭력청소년의 개별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범죄발생 관련 요인, 가족 보호의지 차원에서 다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재범 위험성을 측정하기 위해 구조화된 평가도구(risk assessment instrument)를 사용하지 않고, 위험예측 요인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 조사관이 작성한 분류평가서 평가항목을 활용하여 전체 폭력청소년 412명의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심사서 내에는 폭력청소년의 연령, 성별, 보호자 보호의지, 가족형태, 피해자 합의유무, 학교 중퇴, 가출경력 등의 위험요인들이 모두 기술되어 있어 일반 평가도구 항목 문항과 매우 유사하다 하겠다(조운오, 2010).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하나하나 직접 읽고 확인하여 관련 요인들을 모두 SPSS 패키지 프로그램에 코딩화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Heilbrum 등(2005)의 폭력행동 유발요인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설내처우 결정 요인을 (1) 개인적 요인(연령, 가출, 학교중퇴), (2) 범죄적 측면(죄명, 전과, 합의), (3) 가족적 요인(가족형태, 보호의지)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어린 시절 소년이 겪은 학대 경험이나 소년 개인의 심리적·성격적 특성들이 포괄적으로 폭력원인에 모두 포함되어야 마땅하나, 많은 공식 분류심사서가 과거 피학대 경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본 조사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총 412명을 대상으로 작성된 전문 심사관의 폭력 청소년 분류심사서 내용을 검토, 위험요인 별 특징을 살펴보고, 심사관의 시설내처우 결정(또는 사회내처우 결정)에 영향을 미친 핵심 변수가 무엇인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2008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접수된 심사서를 통해 412명의 폭력청소년을 추출하였는데, 동 기간 내에 접수된 전체 1,211명 비행청소년 중 폭력

사건(N=312)과 성폭력사건(N=100)만을 합하여 본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 자료 수집을 위해 서울분류심사원을 2010년 9월 10일부터 2주 동안 방문하여 법원에 통지 완료된 분류심사서들을 일일이 확인하여 관련 변수들을 재코딩하는 작업을 거쳤다. 그리고 SPS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류심사서 내에 나타난 남녀 폭력청소년의 연령, 가족관계, 가출유무, 공범유무, 보호의지 등의 중요 변수를 살펴보고, 분류심사관의 최종의견에 영향을 미친 유의미한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여기에서 분류심사관의 최종의견은 (1) 시설내처우(소년원 입원)와 (2) 사회내처우(보호관찰 등 프로그램) 두 가지로 구분하였고, 소년원 수용을 제외한 모든 지역사회 교정 프로그램 및 사회복지시설 위탁 활용을 모두 사회내처우로 간주하였다.

2. 변수설정 및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담당 분류심사관이 작성한 심사서 내의 항목들을 읽고, 관련 변수들을 조작적 정의를 거쳐 SPSS 통계 프로그램에 코딩하는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문장으로 기술된 심사관의 주관적 표현이 다소 간략하게 “있음 또는 없음” 등의 형태로 짧게 줄여서 표현될 수밖에 없었다는 연구 한계점을 미리 밝혀둔다. 그러나 가능한 한 분류심사서 내용 전반에 걸쳐 나타난 모든 정보들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였고, 작성자의 의도에 맞춰 상황을 해석하였다. 부연 설명하면, 보호자의 보호의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심사서 내에서 보호자 상담태도 항목 한 가지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 “성장과정” 또는 주변인과의 “전화통화 내용” “보호자 방문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최대한 심사서를 작성한 전문 분류심사관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표 1> 기본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범주	항목	변수	조작적 정의
독립 변수	개인 차원	연령	연령	폭력청소년 연령
		비행경력	가출	가출경험 유무(①없음, ②있음)
		학업관련	중퇴	학업 중퇴 유무(①없음, ②있음)
	범죄 차원	죄명	죄명	본 건 죄명(①단순폭력, ②성폭력)
		범죄경력	전과	전과 여부(이중전과 포함) (①없음, ②있음)
		피해자	피해합의	피해자 합의 여부(①없음, ②있음)
가족 차원	가족형태	가족결혼	결혼가족 형태(①친부모, ②편모가정, ③편부가정, ④양부모)	
	보호자 태도	보호의지	부모 및 보호자의 보호의지 (①없음, ②있음)	
종속 변수	위험성	최종의견	시설내 처우	위험성 판단 보호처분 최종의견 (①사회내처우, ②시설내처우)

본 연구에서는 폭력 위험성에 영향을 미쳐 심사관이 “시설내처우(또는 사회내처우)”로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변수들만을 뽑아 위험예측 회귀모델에 만드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다시 정리하면 조사항목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범주화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개인 기본특징, 범죄행위, 가족관련 요인이 포함된다. 개인 기본특징에는 연령, 가출여부, 중퇴유무 세 변수가 포함되고, 범죄행위 차원에는 죄명, 전과, 피해자 합의 유무가 속해 있다. 죄명에 단순폭력 뿐만 아니라 성폭력이 포함된 이유는 심사관이 소년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처벌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가 알아보기 위함이다. 일반 폭력과 성폭력이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일반적인 청소년 위험사정 도구나 재범예측 사정평가 도구들도 모두 성폭력을 일반 폭력 문항에 포함시켜 점수화하고 있는바 여기에서도 일반폭력에 성폭력을 포함시켜 그 유의미성을 확인해본다(Marczyk et al., 2003). 마지막 차원인 가족관련 요인에는 가족형태와 보호의지 유무 두 가지 변수가 포함된다(<표 1> 참조).

IV. 연구 결과

1. 주요변수 기술통계

시설내처우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412명 전체 폭력청소년의 인구 사회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각각의 변수를 개인차원, 범죄차원, 가족 차원에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개인차원에 연령, 성별, 가출, 중퇴, 가택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연령은 412명의 폭력청소년 중 14세-15세와 16-17세가 각각 4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성별은 남자 폭력청소년이 296명으로 전체의 71.8%를 차지하였다.

가출유무에서는 199명(48.3%)의 폭력청소년이 이전에 집을 나가 보호자 허락 없이 가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관이 작성한 분류심사서 내에 청소년 성장과정 또는 비행경력 이라는 항목이 있어 이를 읽은 후, 가출유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중퇴의 경우, 폭력청소년 412명 중 25.2%에 해당하는 104명이 이미 학교 중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택형태는 자가 비율이 전체의 3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월세, 전세 순이었다.

범죄차원에는 죄명, 전과유무, 피해자합의 유무가 속해있다. 본 연구가 청소년폭력 사범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이므로 대상은 폭력사범에 한정되나, 여기에서도 일반 폭력사범과 성폭력사범이 나누어진다. 312명에 해당하는 전체 75.7%는 일반 폭력사범이고 나머지 100명(24.3%)은 성폭력사범이다. 참고로 이 중 여자청소년의 폭력사범 유형은 일반폭력이 109명, 성폭력이 7건인 것으로 나타나, 일부 소수의 여자청소년이 성폭력사건의 공범(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범죄에 가담했음을 알 수 있다.

전과유무를 보면, 전체 412명의 폭력청소년 중 288명(69.9%)이 본 건 이전에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 폭력청소년이 이미 전과를 갖고 있는 비행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폭력사건에서 청소년이 피해자와 합의했는지를 살펴보면, 152명에 해당하는 전체 36.9%만이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폭력청소년에 대한 기본 특징(전체 인원)

변수	내용	남녀 폭력청소년(N=412)		
		빈도	비율	
(개인) 독립 변수	연령	12세-13세	30	7.3%
		14세-15세	181	43.9%
		16세-17세	181	43.9%
		18세-19세	20	4.9%
	성별	남자	296	71.8%
		여자	116	28.2%
	가출유무	없음	141	34.2%
		있음	199	48.3%
		결측값	72	17.5%
	중퇴유무	없음	308	74.8%
		있음	104	25.2%
	가택형태	월세	141	34.3%
전세		122	29.6%	
자가		149	36.2%	
(범죄) 독립 변수	죄명	폭력사범	312	75.7%
		성폭력사범	100	24.3%
	전과유무	없음	124	30.1%
		있음	288	69.9%
	피해자 합의	없음	260	63.1%
		있음	152	36.9%
(가족) 독립 변수	가족형태	친부모	207	50.2%
		편모	74	18.0%
		편부	91	22.1%
		양부모(친척 등)	40	9.7%
	보호의지	없음(부정적)	164	39.8%
		있음(긍정적)	247	60.0%
		결측값	1	0.2%
종속 변수	조사관	사회내처우	351	85.2%
	최종의견	시설내처우	61	14.8%

※ 죄명을 성별에 따라 구분한 결과, 남자는 폭력사범이 전체의 68.6%, 성폭력사범은 31.4%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전체의 94.0%가 폭력사범이고 나머지 6.0%가 성폭력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청소년도 성폭력사건의 공범(교사범 및 방조범 포함)으로 입건된 경우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이를 폭력사건에 함께 포함하여 검토한다.

가족형태 변수에서는 폭력청소년의 약 절반(50.2%)이 친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편부/편모 또는 친척 등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손가정 형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 심사관은 보호자 및 부모와의 상담 등을 통해 보호의지 정도도 심도 있게 파악하는데, 조사관이 기술한 보호의지 정도를 간략하게 ①보호의지 있음, ②보호의지 없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체 폭력청소년 중 247명(60.0%)의 부모 및 보호자가 어느 정도 보호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약 40%의 보호자는 심사관에 의해 보호의지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분류심사관에 의해 최종의견 내용이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해당하는 중속변수에 해당한다. 전체 청소년 중 85.2%에 해당하는 351명에 대해 사회내 처우(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사회복지시설 위탁포함)가 적합하다는 결정을 했고, 나머지 61명(14.8%)에 대해 시설내처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2. 성별에 따른 관련 변수 평균차이

본 연구에서는 분류심사서에 나타난 연속형 변수들을 가지고 성별 차이에 따른 각 변수의 평균 차이를 함께 조사해 보았다(표 3). 연령, 학력수준, IQ 점수, 생활수준, 전과횟수는 심사관이 작성한 조사서 내의 기본 항목으로써 남녀 성별 차이에서 IQ를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유의미한 집단 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집단 차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남자 폭력청소년이 여자 폭력청소년보다 유의미하게 연령이 높다고 하겠다 [$t(410)=2.52, p<0.01$]. 학력수준 역시 남자집단이 여자집단보다 유의미하게 그 수준이 높고, 생활수준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남자 쪽 평균이 여자 집단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각각 $t(410)=3.61, p<0.01, t(410)=2.12, p<0.05$]. 남녀 폭력집단을 전과횟수 면에서 비교해 보면, 남자 폭력사범 전과 평균이 2.59, 여자 폭력사범 집단 평균이 1.36으로 남자 청소년집단 쪽이 더 높게 나타난다($2.59>1.36$). 그리고 t-test 결과, 두 집단 별 평균 전과횟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t(355)=5.37, p<0.01$]. 죄명과 사회내처우 결정은 연속형 변수로써 t-test가 아닌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각 범주 내 남녀 비율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적은 수치이나 여자청소년에게도 성폭력사범이 공범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 죄명 별 남녀 차이를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남녀 별 시설내처우 결정이 각각 36건(14.5%)과 9건(11.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성별에 따른 변수 차이

변수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value/ Chi-Square
연령	남자	296	15.64	1.26	2.52**
	여자	116	15.01	1.30	
학력수준	남자	296	2.90	0.96	3.61**
	여자	116	2.53	0.94	
I. Q	남자	248	93.10	10.24	-0.03
	여자	81	93.14	10.27	
가족 생활수준	남자	296	1.74	0.77	2.12*
	여자	116	1.57	0.71	
전과횟수	남자	270	2.59	2.41	5.37**
	여자	87	1.36	1.64	
죄명	남자(296)		폭력	203	29.22**
			성폭력	93	
	여자(116)		폭력	109	
			성폭력	7	
시설내처우	남자(248)		사회내	212	0.60
			시설내	36	
	여자(81)		사회내	72	
			시설내	9	

* p<0.05, **p<0.01(two-tailed test).

※ 인구사회학적 변수에서 t-test를 위해 연속형 변수만을 활용하여 성별차이를 확인하였고, 죄명과 시설내처우 변수는 범주형 변수이기에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남녀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폭력청소년의 시설내처우 결정 모델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이는 성별에 따라 예측 모델이 달라진다는 것을 직접 검증하기에 앞서 두 집단을 하나로 놓고, 얼마나 남녀 개별 모델이 전체 모델과 차이가 나는지 비교하기 위함이다. 원래는 모든 독립변수들을 남녀 사이에서 똑같이 통제하여 매칭샘플 등을 활용한 모델 요인 간 비교 방식을 취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성별 변수가 종속변수(시설내처우 결정) 발생확률의 20%미만으로 나타났기에 전체 full model과 나머지 남녀 개별모델을 각각 비교하는 대안적 방식을 사용한다. 다시 말해 남녀 각각의 모델을 단순 비교하는 방법으로는 충분한 “성별에 따른 시설내처우 결정 요인 비교”를 할 수 없어, 전체 모델을 먼저 만들어내고 이를 기반으로 남자 시설내처우

결정모델과 여자 결정모델을 전체 full model과 각각 비교하는 것이다.

전체 폭력청소년 412명에 대한 시설내처우 결정 모델을 만들어 보면, 그 종속변수 분산을 독립변수들이 설명할 수 있는 파워가 약 35%에 이른다(Nagelkerke $R^2=0.35$). 또한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독립변수 조합 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chi^2(10)=70.39, p<0.01$]. 모델을 요약하면, 전체 남녀 폭력청소년 중 시설내 처우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유의미한 조사항목이 가출, 성폭력 죄명, 피해자 합의여부, 보호의지 유무라고 하겠다.

<표 4> 전체 폭력청소년 시설내처우 결정 모델

차원	변수	B	S.E.	시설내처우 결정		
				Sig.	Exp(B)	
개인	연령	0.10	0.17	0.54	1.11	
	가출유무	1.67**	0.50	0.00	5.33	
	중퇴유무	0.66	0.40	0.10	1.93	
범죄	죄명(성폭력사범)	1.57**	0.42	0.00	4.79	
	전과유무	-0.57	0.59	0.34	0.57	
	피해자 합의여부	-1.74**	0.54	0.00	0.18	
가족	가족 형태	편부가정	0.67	0.51	0.19	1.96
		편모가정	-0.41	0.53	0.44	0.67
		양부모(친척)	-0.29	0.65	0.66	0.75
	보호의지	-1.64**	0.45	0.00	0.19	
상수		-6.0	3.08	0.05	0.00	
R ²		0.19(Cox & Snell R ²), 0.35(Nagelkerke R ²)				
-2Log Likelihood		197.35				
Correctly predicted %		87.4%				
Chi-square		70.39, p=0.00, df=10, N=334				

*p<0.05, **p<0.01(two-tailed test).

※ 준거집단(reference group): 죄명은 일반폭력사범, 가족형태는 친부모가정

※ 범주형 변수: 가출유무(①없음, ②있음), 중퇴유무(①없음, ②있음), 전과유무(①없음, ②있음), 피해자 합의유무(①없음, ②있음), 보호의지 유무(①없음, ②있음).

3. 남자 폭력청소년 시설내처우 결정 예측 모델

<표 5>에서 본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폭력청소년 위험요인 모델을 만들어 보았다. 남자청소년이 총 296명으로 그 위험 요인이 개인차원, 범죄차원, 그리고 가족 차원에서 매우 복합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가출, 중퇴, 성폭력, 피해자 합의, 보호의지). 먼저 남자 폭력청소년 296명을 가지고 시설내처우 결정에 영향을 미친 로지스틱 회귀모델을 살펴보면, 그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독립변수 조합 모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chi^2(10)=55.10, p<0.01$]. 그리고 시설내처우 결정이라는 최종 결과변수의 분산을 각각의 독립변수 모델이 약 34% 설명한다고 하겠다 (Nagelkerke $R^2=0.34$). 본 모델을 보다 자세히 해석해 보면, 남자 폭력청소년 중 고위험군에 해당하여 시설내처우 결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은 특히 가출, 중퇴, 성폭력, 피해자 합의, 보호의지 유무라는 다섯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아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표 5> 남자 폭력청소년 시설내처우 결정 모델

차원	변수		B	S.E.	시설내처우 결정	
					Sig.	Exp(B)
개인	연령		0.03	0.20	0.90	1.03
	가출유무		1.70**	0.57	0.00	5.46
	중퇴유무		0.95*	0.47	0.04	2.58
범죄	죄명(성폭력사범)		0.85**	0.24	0.00	2.33
	전과유무		-0.84	0.68	0.21	0.43
	피해자 합의여부		-1.70**	0.56	0.00	0.18
가족	가족 형태	편부가정	0.52	0.60	0.39	1.67
		편모가정	-0.49	0.59	0.41	0.62
		양부모(친척)	-0.02	0.70	0.98	0.98
	보호의지		-1.44**	0.49	0.00	0.24
상수			-3.76	3.47	0.28	0.02
R ²			0.19(Cox & Snell R ²), 0.34(Nagelkerke R ²)			
-2Log Likelihood			157.03			
Correctly predicted %			87.2%			
Chi-square			55.10, p=0.00, df=10, N=258			

*p<0.05, **p<0.01(two-tailed test).

※ 준거집단(reference group): 죄명은 일반폭력사범, 가족형태는 친부모가정

※ 범주형 변수: 가출유무(①없음, ②있음), 중퇴유무(①없음, ②있음), 전과유무(①없음, ②있음), 피해자 합의유무(①없음, ②있음), 보호의지 유무(①없음, ②있음).

가출변수부터 보면, 첫째 다른 요인들을 모두 통제했을 때 가출경력이 있는 남자 폭력청소년이 가출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약 5.46배 더 시설내처우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Exp(B)=5.46). 둘째, 본 모델에서 중퇴유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시설내처우 결정 예측요인으로 작용하였는바,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남자 폭력청소년이 중퇴한 경험이 있을 때 약 2.58배 더 시설내처우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Exp(B)=2.58). 셋째, 성폭력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다른 변수들을 모두 통제했을 때 일반 폭력사범보다 성폭력사범이 심사관에 의해 시설내처우 판단을 받을 확률이 약 2.33배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Exp(B)=2.33). 넷째, 피해자 합의여부 변수에서는 회계계수 값이 음(-)의 값을 가져 폭력청소년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을수록 시설내처우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약 82%(1-0.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xp(B)=0.18). 마지막으로 남자 폭력청소년에 대한 보호의지 유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시설내처우 결정 요인으로 파악되었는데, 회계계수가 음의 값을 보여 다른 변수들을 모두 통제했을 때 부모의 보호의지가 없을 때 청소년에게 시설내처우 결정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보호자의 보호의지가 없다고 조사되면, 약 76%정도 더 남자 폭력청소년에게 시설내처우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Exp(B)=0.24).

4. 여자 폭력청소년 위험요인 모델

이번에는 116명의 여자 폭력청소년에 대한 “시설내처우” 결정 예측요인 모델을 만들어보았다. <표 6>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남자모델과 동일한 종속변수로 로지스틱 회귀모델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예측요인은 남자 청소년의 그것보다 수적인 면에서 제안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가출, 가족형태, 보호의지). 여자 폭력청소년 116명에 대한 폭력위험 예측 모델 설명력은 약 61%로 남자청소년 모델 설명력(34%)보다 더욱 훨씬 높게 나타났다(Nagelkerke $R^2=0.61$). 그리고 각 독립변수를 가지고 모델이 설명하는 종속변수의 분산 설명력뿐만 아니라 모델 자체의 통계적 유의미성도 카이스퀘어 검정을 통해 확인될 수 있었다 [$\chi^2(10)=29.88, p<0.01$].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여자 폭력청소년 시설처우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개

인차원과 가족차원에 한정된 (1)가출유무, (2)가족형태, (3)보호의지 세 변수에 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유무 변수부터 살펴보면, 다른 요인들을 모두 통제했을 때 가출경력이 있는 여자 폭력청소년이 가출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약 38배 더 심사관 조사에 의해 시설내처우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Exp(B)=38.04). 비록 본 연구에서는 개인차원에서 폭력청소년의 가출경험 유무를 다루었으나, 가출유무를 위험요인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청소년의 과거 부모-자녀 관계를 유추한다는 것이고, 청소년이 이전에 부모의 정상적인 지도, 감독을 벗어난 적이 있었는가를 알아보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청소년 가출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 결국 청소년에 대한 보호자의 지도감독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시설내처우 결정 요인으로 특히 가출변수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6> 여자 폭력청소년 위험예측 모델

차원	변수	B	S.E.	시설내처우 결정		
				Sig.	Exp(B)	
개인	연령	0.65	0.50	0.19	1.92	
	가출유무	3.64*	1.87	0.05	38.04	
	중퇴유무	-0.30	1.17	0.80	0.74	
범죄	죄명(성폭력사범)	-0.43	0.99	0.67	0.65	
	전과유무	-0.98	1.67	-0.56	0.38	
	피해자 합의여부	-19.51	7994.19	0.99	0.00	
가족	가족 형태	편부가정	3.46*	1.76	0.05	31.69
		편모가정	0.20	1.43	0.89	1.22
		양부모(친척)	-18.84	11533.13	0.99	0.00
	보호의지	-3.36*	1.74	0.05	0.04	
상수		5.95	7994.20	0.99	383.77	
R ²		0.31(Cox & Snell R ²), 0.61(Nagelkerke R ²)				
-2Log Likelihood		26.64				
Correctly predicted %		91.4%				
Chi-square		29.88, p=0.00, df=10, N=81				

*p<0.05, **p<0.01(two-tailed test).

※ 준거집단(reference group) : 죄명은 일반폭력사범, 가족형태는 친부모가정

※ 범주형 변수 : 가출유무(①없음, ②있음), 중퇴유무(①없음, ②있음), 전과유무(①없음, ②있음), 피해자 합의유무(①없음, ②있음), 보호의지 유무(①없음, ②있음).

가족형태 변수를 보면, 다른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편부가정의 여자 폭력청소년이 다른 정상적인 친부모가정의 청소년보다 시설내처우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약 3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text{Exp}(B)=31.69$). 남자 폭력청소년의 경우, 가족형태 변수가 유의미한 위험요인 독립변수가 아니었던 반면, 여자 청소년에게는 특히 편부가정이 고위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여자 폭력청소년 시설내결정 유발요인으로 부모 및 보호자의 보호의지를 살펴보면, 보호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청소년이 반대의 경우보다 심사관에 의해 위험군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약 96% 정도($1-0.04$) 더 높게 나타났다($\text{Exp}(B)=0.04$). 남자 폭력청소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호자의 진지한 상담태도 및 보호의지 정도는 최종 심사 판단내용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고 하겠다.

종합해 보면,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과 달리 훨씬 적은 수의 위험성 판단기준이 실무에서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3개(5개)), 그 위험요인 내용에 있어서도 남자청소년과 달리 매우 개인적이고 가족적인 분야에 한정되어 위험성 판단 기준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남자 청소년이 개인, 범죄, 가족을 모두 포함하여 죄명, 피해자 합의여부, 학교중퇴 여부 등의 다양한 변수들이 심사관에 의해 모두 시설내처우 결정 준거로 활용되는 것과 달리, 여자 청소년에서는 가출유무, 결혼가정, 보호자 보호의지라는 세 변수에 한정되어 시설내처우 결정이 내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 2008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약 1년 동안 서울분류심사원에서 접수된 청소년 폭력사건(일반폭력 및 성폭력 포함) 412개의 사례를 분석하여, 성별에 따라 시설내처우 결정 요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소년사법 절차 내에서 사후 소년 보호처분 방향과 그 재범위험성을 평가받아 “시설내처우” 또는 “사회내처우” 결정을 받게 되는 폭력청소년들에게 성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본다.

보통 비행청소년의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가족관계, 개인특성, 학업상황, 전과여

부 등 폭넓은 요인을 조사하여 재범 및 문제행동 가능성을 예측하고, 그를 기반으로 최종 심사관 의견 내용이 제시되는데, 그 결정이 남녀 청소년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전체 청소년범죄의 폭력사범이 증가하고 있고, 여자 청소년의 소년범 차지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면, 여자 청소년 위험 성향을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이고, 성별에 따라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평가하여, 추가적인 폭력 및 문제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그 변수들을 교정 처우 단계에서 세심히 살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단, 본 연구에서 분류심사조사관들의 개별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고려되지 못했음을 먼저 밝혀둔다. 조사관 성별에 따라 남녀 청소년에 대한 위험요인 항목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류심사서 내용에만 초점을 두어 조사관 당사자의 개인적 특징을 본 연구 결과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분류심사 조사관의 연령, 성별, 근무경력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독립변수가 다중회귀분석 모델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116명의 여자 폭력청소년과 296명의 남자 폭력청소년을 연령, 학력, 전과횟수, IQ, 생활수준 면에서 집단 평균 차이를 살펴본 결과, IQ와 시설내처우 결정 변수를 제외하고 모든 변수가 유의미한 집단의 평균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령, 학력, 전과, 생활수준 각각 $\chi^2=2.52, 3.61, 5.37, 2.12, p<(0.05)$). 남자 폭력집단이 여자보다 연령이 유의미하게 높고, 전과 횟수도 평균 1.23만큼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학력수준도 여자 폭력사범보다 남자 청소년이 더 높았고, 가족 생활수준도 남자 폭력청소년이 더 높아 위험성 평가 상황에서 남녀 차이가 소년 처우 개별화 전략에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될 필요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전문 분류심사관이 작성한 심사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남녀 시설내처우 결정 로지스틱 모델(시설내처우 결정)을 만든 결과, 두 모델이 종속변수 측면에서 양적·질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폭력청소년의 경우, 개인차원(연령, 가출, 중퇴), 범죄차원(죄명, 전과, 피해자합의), 가족차원(가족형태, 보호의지) 모두에서 유의미한 처우결정 요인이 나타났는데, 특히 ①가출, ②중퇴, ③죄명, ④피해자합의, ⑤보호의지라는 다섯 가지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시설내처우 결정 요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각각의 변수들을 살펴보면,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남자 청소년의

경우 이전에 가출경험이 있었던 경우, 시설내처우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약 5.5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ext{Exp}(B)=5.46$). 학교를 그만 둔 중퇴상태에 있는 경우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 약 2.6배 더 시설내처우 필요 위험군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text{Exp}(B)=2.58$).

또한, 남자청소년이 일반 단순폭력 사건이 아니라 성폭력을 저질렀을 경우, 약 2.3배 정도 더 심사관으로부터 “시설내결정” 최종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고, 피해자 합의를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위험군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text{Exp}(B)=2.33$, $\text{Exp}(B)=0.18$). 남자 폭력청소년의 경우, 부모 및 보호자의 보호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시설내처우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약 76%정도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ext{Exp}(B)=0.24$).

여자 폭력청소년 로지스틱 회귀모델에서는 오직 개인차원과 가족차원의 변수들만이 종속변수(시설내처우 최종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 청소년의 모델과 달리 최종의견에 범죄 차원(죄명, 전과, 피해자합의) 변수는 전혀 유의미한 통계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오직 ①가출, ②가족형태, ③보호의지 세 요인만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 분산에 대한 모델 설명력은 약 61%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다른 변수들을 모두 통제했을 때, 여자 폭력청소년의 경우 가출 경력이 있을수록 약 38배 더 시설내처우 최종의견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Nagelkerke $R^2=0.61$, $\text{Exp}(B)=38.04$).

또한, 여자청소년의 경우 친부모 가정보다 편부가정 청소년이 심사관에 의해 시설내처우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31배 정도 높게 나타났고, 남자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보호자의 보호의지가 미약할수록 시설내처우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약하면, 남자 폭력청소년과 여자 폭력청소년이 가출경력 변수와 보호의지 변수는 양쪽 모두에서 동일하게 유의미한 수준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남자 청소년이 개인, 가족, 그리고 범죄차원에서 학교중퇴여부, 피해자 합의여부와 같은 다양한 변수에 의거 심사관의 시설내처우 결정이 정해지는 것과 달리, 여자폭력청소년은 가족 관련 변수에 치중하여 시설내처우 결정 여부가 평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정책적으로 해석하면, 전문 조사관이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가출경력과 보호의지 정도를 중요한 시설내처분 결정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직접적으로 가출과 보호자의 보호의지가 무조건적인 재범예측 인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류심사서 분석 결과 실무자들이 중요하게 다루는 시설내처분 결정요인이 특정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소년원이나 보호관찰소에서도 비행청소년의 가출과 보호자 보호의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범죄예방 전략을 성별에 따라 개별화,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시설내처우 결정 요인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각기 상이한 유발 요인을 갖고 있다면, 교정지도 및 소년보호정책에서도 남녀 폭력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 원호 방침 전반에 걸쳐 성별-개별화(gender-specific) 전략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남녀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준거들이 얼마나 적절하고 타당한지는 정확히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다. 재범률 등의 사후 추적연구를 통해 기존의 판단 기준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 연구를 통해 성별에 따른 청소년 시설 내 처우 결정 요인이 서로 다르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처음 분류심사서 결정 단계에서부터 남녀 청소년에 대한 상이한 처우결정 잣대가 적용된다면, 처우 내용이나 감독수준 역시 그에 상응하는 성별 특성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이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단,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다양한 폭력청소년 심리검사 결과나 소년의 어린 시절 학대 경험 등이 모델에 포함되지 않아, 성별에 따른 심리상태 차이가 시설내처우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었음을 미리 밝혀둔다. 후속연구에서 보다 정교화된 모델이 개발되고, 청소년의 심리특성과 성격검사 자료 등이 모두 분석 모델에 포함되어 시설내처우 결정이라는 최종의견 관련 요인이 보다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본 연구를 시작으로 심사관의 최종의견이 실제 청소년 재범발생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종단적인 측면에서 청소년 재범추적 연구(follow-up study)를 실시하여 범죄 유형별 분류심사서 타당도 관련 분석연구가 계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법무부(2010). 보호자와 함께 알아보는 분류심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법무부(2011). 범죄예방정책 통계연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법무부(2010). 범죄백서. 법무부, 법무연수원.
- 원혜옥(2002). 소년범죄에 대한 시설내 처우의 문제점-미결구금제도(소년분류심사원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교정연구, 제5호, pp. 7-30.
- 조윤오(2010). 법무부 조사제도 전문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10 범죄예방정책연구. 법무부.
- _____ (2009). 청소년 폭력행위 예측모델에 관한 연구-여자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6권 제1호, pp. 165-184.
- 최석윤(2008). 한국의 소년분류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0권 제2호, pp. 719-742.
- Allgood-Merton, B., Lewinshon, P. M., & Hops, H.(1990). Sex differences and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 99*, pp. 55-63.
- Burski, R., J. Jr., & Grasmick, H. G.(1993). *Neighborhoods and crime: The dimensions of effective community control*. New York: Lexington Books.
- Cott, C. C., Lee, R. J., & Heibrun, K.(2001). The prediction of criminal recidivism in juveniles. A meta-analysi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Vol. 28*, pp. 367-394.
- Dawson, D., & Reither, J.(1998). Juvenile violence overview: An introduction to the available literature.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and the Law Newsletter, Vol. 23*, pp. 10-11.
-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2001). *Youth violence: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Rockville, MD: Author.
- Funk, S. J.(1999). Risk assessment for juveniles on probation: A focus on gender.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Vol. 26*, pp. 44-68.
- Hawkins, J. D., Herrenkohl, T. I., Farrington, D. P., Brewer, D., Catalano, R. F., Harachi, T. W. et al.(2000). *Predictors of youth violence*. Juvenile Justice

- Bulletin.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 Heilbrun, K., Goldstein, N., & Redding, R.(Eds.)(2005).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assessment, and interven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eimer, K.(2000). Changes in the gender gap in crime and women's economic marginalization. In G. LaFree(Ed.), *The Nature of Crime and Continuity and Change*(pp. 427-428).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Jessor, R., Van Den Bos, J., Vanderryn, J., Costa, F. M., & Turbin, M. S.(1995). Protective factors i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Moderator effects and developmental change.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31*, pp. 923-933.
- Kraemer, H. C., Kazdin, A. E., Offord, D., Kessler, R., Jensen, P., & Kupfer, D. J.(1997). Coming to terms with the terms of risk.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Vol. 54*, pp. 337-343.
- Marczyk, G., Heilbrun, K., Lander, T., & DeMatteo, D.(2003). Predicting juvenile recidivism with the PCL: YV, MAYSI, and YLS/CMI.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nsic Mental Health, Vol. 2 No. 1*, pp. 7-18.
- Mitchell, J. T., Brown, C., Schulz, C., Webster, S. E., Underwood, L. A., & Semple, W. E.(1997). Comparing the mental health needs of female and male incarcerated juvenile delinquents.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Vol. 15*, pp. 195-202.
- Minor, K. I., Wells, J. B., & Angel, E.(2008). Recidivism among juvenile offenders following release fro residential placements: Multivariate predictors and gender differences. *Probation and Parole Current Issues*, pp. 171-188.
- Monahan, J., Steadman, H. J., Silver, E., Appelbaum, P. S., Robbins, P. C., Mulvey, E. P., Roth, L. H., Grisso, T., & Banks, S.(2001). *Rethinking risk assessment: TheMacArthur study of mental disorder and viole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razek, P. J., & Haggerty, R. J.(Eds.)(1994). *Reducing Ritz jbl mental disorders:*

- Frontiers of preventive intervention research*.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O'Briend, R. M.(1999). Measuring the convergence/divergence of serious crime arrest rates for males and female: 1960-1995.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Vol. 15, pp. 97-114.
- Penney, S. R., Lee, Z., & Moretti, M. M.(2010). Gender differences in risk factors for violence: An examination of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 structured assessment of violence risk in youth. *Aggression Behavior*, Vol. 36, pp. 390-404.
- Schwalbe, C. S., Fraser, M. W., Day, S. H., & Cooley, V.(2006). Classifying juvenile offenders according to risk of recidivism. Predictive validity, race/ethnicity, and gender.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Vol. 33, pp. 305-324.
- Trulson, C. R., Marquart, J. W., Mullings, J. L., & Caeti, T. J.(2005). In between adolescence and adulthood. Recidivism outcomes of a cohort of state delinquents.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Vol. 3, pp. 355-387.
- Zimmerman, G. M., & Messner, S. F.(2010). Neighborhood context and the gender gap in adolescent violent crim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75 No. 6, pp. 958-980.

ABSTRACT

A Study on the Risk Factors of Adolescent Violent Crimes and Gender Differences

Cho, Youn-Oh*

This study was undertaken in order to explore the risk factors of violent youths who were in the process of the juvenile classification system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this study aimed at unveiling gender difference in terms of the risk factors that might affect the “facility-based treatment” decision of investigation officers. Girls were traditionally expected to be significantly less aggressive than boys. Therefore, violence was regarded as a predominantly male phenomenon for the first three quarters of the twentieth century. However, the numbers of female youth crimes have increased over the past decade, and adolescent violent crimes have begun to be the subject of tremendous concern in terms of the nature and potential risk factors of female offending. To address this crucial issue,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high risk factors of 412 violent youth criminals by analyzing their official youth risk assessment reports. The youth classification and risk assessment reports were written by professional investigation officers in the Seoul Classification Center from September 2008 to September 2009. The risk factor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dimensions: (1)individu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2)crime-related characteristic, (3)and family characteristics.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the violent male youth demonstrated that on average, whether they were runaways, school dropouts, sex offenses, victim compensation, and family

* Dongguk Uni-Seoul, Professor in Police Administration Department.

guardianship risk factors increased the odds of a young adult being referred to a youth detention center when other risk factors were statistically controlled. On the other hand, the second logistic regression model for violent female youth indicated that the likelihood of receiving a “facility-based treatment” decision depended on only three factors; whether they were runaways, family structure, and family guardianship. Specifically, there was a statistically 38.0% greater chance of receiving facility-based decision in the case of runaway girls than the girls who did not have any experience of being runaways. In addition to this, relevant policy implications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 gender difference, female violent adolescents, juvenile delinquents, juvenile classification center, risk factors

투고일 : 6월 12일, 심사일 : 8월 25일, 심사완료일 : 9월 29일